



의안번호	제143호
------	-------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복지국장
제출연월일	2022. 10. 6.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3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2010년 이후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현재 (재)논산시 장학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법」 뿐 아니라 상위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률을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 나. 장학회의 사무를 시 업무와 분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제9조)
- 다. 장학회의 수행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5조)
- 라.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운영규정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 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참고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8. 22. ~ 2022. 9. 1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041-635-2125)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논산시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는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장학회의 임원 등) ① 장학회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둔다.

③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제7조(출연금)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장학회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 전까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 관리) 장학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장학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인구청년교육과장 양 미 호
	교육지원팀장 이 봉 순
	담당자 윤 귀 련 (746-5773)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인구청년교육과장 양 미 호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 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지방재정법」

- 제1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